

◆ 양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전문위원 이 재호 입니다.
- 「양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시장이 2006년 4월 25일 제출하였으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4월 4일 간담회시 사전설명을 마친 안건이 되겠습니다.
-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및 내용은 앞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법률 제7664호, 2005. 8. 4. 공포, 2006. 1. 1. 시행)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1991년부터 조성되어 온 경영수익사업의 특별회계 기금이 약 160억원으로 동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없는 등 동 기금이 충분히 확보 되었기에 일반회계 전입금의 비율을 축소 조정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골자

- 법령 제명 띠어쓰기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제명을 “양주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양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로 개정 함(제명)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법률 제7664호, 2005. 8. 4. 공포, 2006. 1. 1. 시행)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위임 법명을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으로 개정함(안 제1조)

- 경영수익사업의 특별회계기금이 약 160억원으로 동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없는 등 동 기금이 충분히 확보 되었기에 일반회계 이자수익금의 50퍼센트에 상응하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의 비율을 10퍼센트로 축소 조정함(안 제3조제2항제1호)
- 지방재정법(법률 제7663호 2005. 8. 4)개정으로 회계구분 근거 법규가 변경되어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을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으로 변경함(안 제4조제1항)
-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조례 제203호 2005. 5. 2) 개정으로 인하여 투자기금운용 회계공무원중 분임운용관을 “기획감사담당관” 에서 “산업경제과장” 으로 변경함(안 제9조제1항제2호)

【 검토결과 】

- 본 개정 조례안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법률 제7664호, 2005. 8. 4. 공포, 2006. 1. 1. 시행)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위임 법명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으로 개정 하는 사항과
- 지방재정법(법률 제7663호 2005. 8. 4)개정으로 회계구분 근거 법규가 변경되어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을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으로
-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조례 제203호 2005. 5. 2) 개정으로 인하여 투자기금운용 회계공무원중 분임운용관을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산업경제과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 개정으로 인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 안 제3조의 양주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의 조성 재원 중 일반회계 이자수익금의 50퍼센트에 상응하는 일반회

계에서의 전출금의 비율을 10퍼센트로 축소 조정함이
타당한지의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